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321820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김주혜, 이동성

변론 종결2017. 3. 31.

판결 선고2017. 4.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39,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6.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8. 17.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6.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6. 접수 제24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연대보증계약 및 보험금의 지급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6. 3. 상급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5. 7. 6. 원고와 다음과 같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 보증내용: 하도급 기본거래 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손해배상 지급보증
- 보험기간: 2015. 6. 3.부터 2016. 6. 2.까지
- 약정서

제7조(연대보증) ② 보증인은 원고에게 제공한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인을 원고가 거래상 필요에 따라 원고가 인정하는 담보나 보증인으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특약조항]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채당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 포함)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

2) 피고 C은 2015. 5.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2015. 7. 6.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런데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6. 4. 21.경 2016. 3.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4)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6.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6. 5. 19. 소외 회사에게 137,239,231원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은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C의 사임 및 재산처분 등

1) 피고 회사는 2016. 1. 5. 피고 C에 관하여 2015. 12. 22. 사임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청구한 2016. 4. 21. 별지 1. 기재와 같이 작성일이 2016. 3. 31.로 기재된 보증해지통보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3) 한편 피고 C은 2016. 4.경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과 ② 김해시 F 임야 59900㎡ 중 5990/59900지분, ③ 경남 창원군 G 대 522㎡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던 중(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6. 접수 제24588호로 2016. 3. 3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137,239,231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따라 2016. 5. 20.부터 2016.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5. 10.경 피고 회사의 주주에서 제외되고 2015. 12. 2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퇴사하면서 동시에 원고에게 사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주지 아니하여 2016. 4. 21.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사고는 피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이 종료한 이후인 소외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2016. 5. 2.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규정한 보험사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2016. 3.분 임금을 체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보험사고는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에게 임금을 청구한 2016. 4. 21.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연대보증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5. 12. 22.경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던 기업은행 통영지점이 2016. 1. 29. 피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전화로 통화를 하였다는 원고 통영지점 소속 대리점 직원 H의 녹취서 내용이나 법정 진술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의 이행완료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행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에 가까운 점, ② 피고가 사임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사임이나 및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관련 서류를 송부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라고 하는 I도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원고에게 명의변경 요청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2015. 12. 22.경 원고에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연대보증의 해지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는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 즉 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 또는 그로 인한 불확정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라 함은 단순히 채무의 발생과 그 이행에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부터 수회 반복적으로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보증기간 내에서 불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담한다는 의미이기는 하나, 이는 보증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일 뿐 수회의 반복적 발생, 소멸에 의한 증감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계속적 보증의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 약정서 제7항에 의한 보증인의 변경 또는 해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계속적 보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59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①, ②부동산 가액은 합 60,0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 시가 275,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가액은 125,000,000원인데,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은 122,500,000원($60,000,000\text{원} + 125,000,000\text{원} \times 1/2$)이 되는 반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한 상환금의 원금채무만 하더라도 137,239,231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청구한 2016. 4. 21.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연이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C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지정

별지